홍기문의 『訓民正音』 번역과 국어학사의 한 경향
-『正音發達史』에 전재된 <예의>의 번역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혁(한성대)

1. 서론

우리 국어학계에서 洪起文의 연구를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를 순수한 국어학자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과 월북한 국어학자라는 시선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방종현 명의의 원본 『訓民正音』을 최초로 번역한 인물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正音發達史』라는 역저를[1] 저술한 해방 후 초기 국어학 연구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단 이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북한의 국어학계(조선어학계)를 이끈 지식인으로서 그의 훈민정음 번역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학문적 경향을 탐색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자 당연한 시도다.

우리의 근대사에서 민족의 분단은 상호 간 학문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 책임은 연구자의 몫은 아니지만 북한의 국어학 연구를 불가피하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대적 한계에서 1988년까지 언급조차 하기 어려웠던 인물이 국어학에서 여럿이 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홍기문이다.[2] 실제로 김민수(1980), 김민수(1985), 이근수(1988) 이전에 홍기문의 훈민정음 업적을 거론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 백두현(2015)에서는 홍기문의 『正音發達史』를 "해례본의 발견으로 해방 직후의 고조된 훈민정음 연구 성과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2) 문학에서는 홍명희를 거론하면서 강영주(1992~1997, 2004) 등에서 홍기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1988년 이후 북쪽의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우리는 홍기문의 역작『正音發達史』를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었으나, 그에 대한 언급은 항상 단편적이었다. 이현희(1990, 2003) 등 여러 선행연구에서 거론되었지만, 그의 훈민정음 번역과 그 연구를 미시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 이후 우리는 이 문헌을 참고문헌으로 자주 인용하면서도 그 내적 구조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가 제시한 훈민정음 번역과 그의 학술적 용어에 대한 천착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홍기문의 훈민정음 번역과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훈민정음 번역사에서 방종현과 협업으로 이루어진 홍기문의 훈민정음 번역의 업적을 새롭게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둘째로 탁월한 저술로 평가 받는『正音發達史』를 통해 그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용어에 주목하고, 셋째로 상권에 전재된 소위 <예의>를 중심으로 그 번역의 분석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결국 이번 발표는 그 동안 훈민정음 연구사에서 자주 거론되기만 했던 홍기문의 연구 성과 일부에[3] 대한 미시적 재검토이다. 따라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덧붙여 그 국어학적 가치를 논하고 홍기문의 업적이 지난 국어학사적 의의와 그 경향을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 본론

2.1.『訓民正音』의 번역 주체와 홍기문의 최초 완역

『訓民正音』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되었다.[4] 이 원본이 발견됨으로써 훈민

3) 홍기문의『正音發達史』는 방대한 저서이다. 이번에 다루는 <예의> 말고도 <해례>를 포함한 나머지 내용도 그 내용이 아주 많아서 몇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정철(1954)의 "원본 훈민정음 보존 경위에 대하여"에서는 원본『훈민정음』의 발견 경위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정음 창제와 관련된 신문자 기원과 제자 원리 등을 비롯한 많은 비밀들이 풀렸다. 그런데 그 원본은 한문본이었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했고, 『訓民正音』이 발견된 직후 1940년에 처음으로 국역된 후 여러 국어 연구자들의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외국학자가 원본을 영역하기도 했다.[5)] 아래 그림과 같이 그 『訓民正音』은 <朝鮮日報> 연재 기사본이었고,[6)] 1940년 7월 30일에서 8월 4일까지 5회에 걸쳐 국역되었는데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번역의 범위가 <제자해>에서 <용자례>에 국한되어 <예의> 및 <정인지후서>는 국역에서 빠진 것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朝鮮日報> 연재 기사본 1회의 서두 말미에 다음과 같이 언급이 나온다.

---

5) Gari K. Ledyard(1998)의『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에『訓民正音』의 영역이 전재돼 있다.

6) 최초 번역에 활용된 홍기문이 입수한『訓民正音』의 모사본은 그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박승빈의 조선어학연구회는 이 소식을 알리고자 1940년 10월15일자 '정음(正音)'35호에 '訓民正音'이라는 제목으로 전문을 게재했다. "編輯者는 아직 原本을 보지못하얏고 方鍾鉉 洪起文 兩氏의 共同所有인 原本 模寫本에 依하야 正音誌에全文을 실리게 된 것이다. (중략) 方鍾鉉 洪起文兩氏에게 感謝의 뜻을表하는 바이다."

> 이제 먼저 그原文의 飜譯을 실고 뒤를 이어 거기 對한 註解 乃至 우리 두 사람의 硏究를 發表하겠다. 단지 이책을 入手한지 겨오 旬日을 넘지 못하여 그 譯文이 아직 未定稿도 잇는것을 諒解하기 바란다. (여기 對한 一切의 發表는 兩人中 누구의 이름으로 되든지 共同勞作임을 付記하여 둔다) (밑줄은 발표자)

'그 譯文이 아직 未定稿'이라는 표현은 <예의>와 <정인지후서>에 대한 국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례본 발견 당시 15세기 당시의 언해본(국역본)이 있기 때문에 <예의>의 경우는 1940년에는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정인지후서>가 마지막 5회 기사본에도 전재되지 않은 점은 그에 대한 번역문이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발표자는 판단했다. 또한 "여기 對한 一切의 發表는 兩人中 누구의 이름으로 되든지 共同勞作"이라는 표현은 『訓民正音』의 번역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두 사람의 연구 발표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역자는 방종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방종현은 그의 저서 『原本解釋 訓民正音』(京城: 震學出版協會, 1946.7.10.)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譯者의 말
> 이글은 벌서 五年前인 庚辰年 七月 三十日로 부터 八月 四日 까지 五回로 分하야 朝鮮日報에 揭載 되었던 것이다. 그 發表者의 名義는 비록 내 이름으로 되었으나 이것을 實際로 飜譯한 이는 洪起文 이다.(밑줄은 발표자)

실제로 『訓民正音』을 번역한 사람이 홍기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1940년『訓民正音』번역이 최소한 홍기문 단독으로 이루어졌거나 방종현의 인품에 비추어 그와의 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한문 수학을 통해서 번역의 실증성에 충실했던 홍기문의 한문 번역 역량을 생각해 볼 때 그가 『訓民正音』을 번역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홍기문은 조선일보 학예부장을 맡고 있어서 방종현 명의로

『訓民正音』 번역의 기사를 내고 그 과정을 주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방종현이 언급한 두 내용에 따라서 『訓民正音』은 홍기문 단독 번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김민수(1985)에서는 방종현(1946)의 역자의 말에 주목하여 그 번역의 내력이 천명되었다고 밝혔고, 이상혁(2005)에서는 『訓民正音』의 최초 번역자를 홍기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그 후 방종현의 『原本解釋 訓民正音』에는 <예의>만을 빼고 『訓民正音』 번역이 전재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부 철자의 수정을 빼고는 1940년 <朝鮮日報> 연재 기사본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1940년에 '未定稿'로 남겨 둔 <예의> 부분과 <정인지후서> 중에서 후자는 방종현의 『原本解釋 訓民正音』에 새롭게 번역되어 실려 있다. 그 반면에 홍기문의 『正音發達史』에서는 어제서문을 포함한 <예의>의 현대 번역, <해례> 전체, 그리고 <정인지후서>까지 번역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번역을 『訓民正音』 현대 국역의 최초 완역으로 보고자 한다. 이 완역은 1940년 <해례> 번역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 『訓民正音』 번역사의 기술에서 필자는 두 가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종현 자신이 그의 책 '역자의 말'에서 밝힌 바에 따라서 홍기문이 1940년에 『訓民正音』을 최초로 국역한 연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訓民正音』의 최초 국역 완역은 홍기문의 『正音發達史』(1946)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은 앞으로 국어학의 『訓民正音』 번역사에서 새롭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2.2. 『正音發達史』(1946)의 『訓民正音』 <예의> 번역 텍스트 구조

주지하다시피 『正音發達史』은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돼 있다. 상권은 '제1편 古典의 解詁', 하권은 '제2편 沿革의 考證'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아래 각 권마다 '例言'과 '導說'을 함께 갖추고 있다. 또한 상권은 총 4장으로, 하권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은 『訓民正音』 텍스트를 대상으로 번역과 주석, 그리고 필자의 평가와 해설 중심으로 그 4장은 예의, 해례, 언해, 참

고문헌 순이다. 그 반면에 하권은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차자표가와의 관계, 신문자의 명칭, 어문 정책, 훈민정음의 사람들에 대한 논의 등으로 제1장 '製作의 緣起'부터 제8장 '反對의 一派'에 이르기까지 '沿革의 考證'이라는 하권의 취지에 맞게 실증적 국어학사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 중에서 『正音發達史』 상권 제1장에 드러난 『訓民正音』 <예의>의 번역 텍스트 구조는 다음과 같다.

第一篇 古典의 解詁					
例 言	導 說	第一章 例 義			
	一. 例義	第一節 序論章	第二節 文字章	第三節 用法章	第四節 齒音章
	二. 解例	一. 原文	一. 原文	一. 原文	一. 原文
	三. 諺解	二. 譯文	二. 譯文	二. 譯文	二. 譯文
	四. 參考文獻	三. 註解	三. 註解	三. 註解	三. 註解
		四. 評解	四. 評解	四. 評解	四. 評解

제1장 『訓民正音』 <예의>에 앞서 등장하는 '例言'과 '導說'은 『正音發達史』 상하권 모두의 도입부이다. '예언'은 이 책의 일러두기에 해당하며, '도설'은 이 책의 머리말, 혹은 도입부를 의미한다. '예언'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本來 이 篇은 解例와 東國正韻이 나오기 前 方鍾鉉씨로 더부러 諺解를 中心삼아 그 두 冊의 本貌를 推證하려던 것이다. 지금 와서는 본래의 계획이 와해될뿐이 아니라 徒勞에 돌아 가 버린 부분조차 업지 안타. 그런데 諺解의 校勘은 그 당시 兩人의 合作이다. 特히 이 點은 明記하여 두는 바다"(밑줄 발표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正音發達史』는 『訓民正音』의 발견과 관계없이 계획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訓民正音』의 번역은 홍기문 단독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諺解의 校勘은 그 당시 兩人의 合作이다.”라는 표현은 두 사람의 협업이 <諺解>에 국한된 것임을 뜻한다. 그리고 그 맥락은 1장에서 방종현이 언급한 “여기 對한 一切의 發表는 兩人中 누구의 이름으로 되든지 共同勞作”이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다.

‘도설’에서는 <예의>, <해례>, <언해>라는 명칭에 대한 홍기문의 생각, 그리고 <참고문헌>에 <정인서후서>를 넣은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는 『訓民正音』 번역의 도입부이다. 우선 ‘一, 例義’에서는 ‘예의’라는 이름을 붙인 그 역사적 근거와[7] 함께 홍기문 특유의 ‘解詁’가 엿보인다. <左傳序>를 인용하며 “‘例’는 同一한 事物의 準則이 됨을 이름이요, 義란 一定한 事物의 該當한 措處를 이름으로서 곳 準則을 이루는 規定이라는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곧 ‘예의’를 ‘보기와 그 뜻’으로 단순하게 보고 있지 않다. 그의 탁견이자 ‘예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어느 意味로는 解例나 諺解로도 비치 못 할 하나의 聖典이다.”이란 표현은 <예의>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다. 그리고 홍기문은 도설에서 <예의>를 아래와 같이 나누어 그 명칭을 부여하였다.

> “이 例義는 맨처음 文字制作의 目的을 簡單히 說明하얏스니 그를 序論章이라고 하고 그 다음 二十八字와 거긔 對한 說明이 잇스니 그를 文字章이라 하고 또 그 다음 用法을 그역시 簡單히 說明하얏스니 그를 用法章이라고 하려 한다.”

‘二, 解例’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례’를 설명하고 있다.

> “여긔서 世宗은 名儒 八人을 親히 選拔해서 한편으로 理論을 整備시키는 동시에 한편으로 그 整備된 理論을 著述시킨 것이다. (중략) 오히려 이 解例는 奧妙함에 치우치고 複雜함에 지나치어 例義를 解釋하얏다는 이보담 例義를 難解化한 嫌疑가 업지 안 하나 그 것은 訓民正音 制字나 用法의 그 自體로부터 오는 不得已한 現象이다. 여하튼 解例란 訓民正音을 製作한 그분의 理論이다.”

---

7) 癸亥冬, 我殿下略揭例義而示之, 名曰訓民正音(鄭麟趾後序).

홍기문의『正音發達史』도설에서 '해례'는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해 그 편찬자를 집현전 학자들로 보고 있지만, 그 이론 자체는 세종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례'의 번역은 '五解一例'의 순서대로 위의 번역 구조에 따라 완성되었다. 여기서도 하나 주목할 것은 홍기문의 시각에서 <해례>에는 <정인지후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직 '五解一例'만을 말 그대로 '해례'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인지후서>는 다른 서문들과 함께 <훈민정음해례>의 참고문헌적인 성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논의가 한문본『訓民正音』<예의>에 대한 검토라고 한다면『正音發達史』상권 제3장 <언해>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 언해는 예의의 전문에 주석을 더한 것으로 <해례>와 구별하기 위해 '언해'라고 불러 둔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도설 '三, 諺解'와 제3장의 제1절 내용의 분석에 따른 목차를 보면 홍기문이 제시한 신선한 번역 메타언어가 용어로 등장한다.

> "그런데 諺解에는 첫재 諺讀라고 부르려는 部分이 잇스니 그 것은 例義를 各節로 나호아서 別行으로 맨들고는 漢字의 每字아래 音을 달고 또 토가 쩔어지는 곳에 토를 단 것이요 둘재 諺註라고 부르려는 部分이 잇스니 그 節內에 새로 나오는 漢字를 註解한 것이요 셋재 諺譯이라고 부르려는 部分이 잇으니 그 節을 다시 우리말로 삭이어 노흔 것이다. 諺讀와 諺譯은 다 각각 別行이요 쪽 가튼 大字로서 오즉 諺讀가[8] 諺解보담 上一字 나추어 잇슬뿐이나 諺註는 小字 兩行으로서 諺讀와 바로 接續되야 잇다."

『訓民正音』언해본 구조에 대한 서술인데 '諺讀, 諺註, 諺譯'라는 표현으로 그 동안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諺讀는 그 동안 우리가 차자표기를 통해서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용어 훈민정음 현토 '구결문'에 해당한다. 諺註는 우리가 구결문 아래 둘 줄로 이어 쓴 한자 뜻 새김 '협주'라고 불렀던 부분이다. 諺譯은 우리가 '언해문, 국역문'이라고 불렀던 부분으로 이 세 용

8) '**諺讀라고, 諺讀가**'라고 표기돼 있는 것으로 봐서 홍기문 자신은 의도적으로 '諺讀'을 '언독'이 아니라 '언두'로 읽으려고 했다는 점도 거의 확실하다. '吏讀'를 참고해 '諺讀(언두)'라는 용어를 새로이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는 '諺解'라는 상위 개념과 조응하면서 아주 정합적 용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그 상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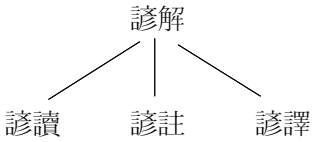

이러한 국어학 학술 용어가 왜 학계에서 그 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발표자는 그 이유를 쉽게 추정하기 어렵다. 언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로 파악하지 않고 한문 문장을 나누어 각 구절에 토를 붙이고(諺讀), 그 구절에 등장하는 한자들을 각각 풀어주고(諺註), 그 연후에 우리말과 새기는(諺譯) 전체로 보고 있다는 점은 '언해'의 개념 확장이자 탁견이다. 향후 발표자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번역 구조를 '언해' 아래 '언두(문), 언주, 언역(문)으로 부르고자 한다.

'四, 參考文獻'에서는 <정인지후서>를 따로 분리해 왜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解例中에 鄭麟趾의 序文이 들어 잇다고 하지마는 그 自體 解例와는 性質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序文을 따로 쏩고 거긔다가 申叔舟의 東國正韻의 序와 洪武正韻譯訓의 序, 成三問의 直解童自習序, 또 四聲通攷凡例의 四種을 合하야 參考文獻의 一章을 따로 맨든 것이다."

이상으로 第一篇 古典의 解詁의 '예언'과 '도설'을 통해서 홍기문이 『訓民正音』을 번역하기 전에 제시한 국어학적 전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의'는 단순히 보기와 그 뜻이 아니고 『訓民正音』의 준칙과 규정이라는 점, '해례'는 <訓民正音解例>에서 '五解一例'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정인지후서>를 다른 문헌의 서문과 마찬가지로 <참고문헌>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홍기문의 관점이었다. 그리고 '언해본(국역본)'을 '諺解'의 대상으로 보고, 언해를 세 가지 하위 개념, '諺讀, 諺註, 諺譯'을 한데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2.3. 홍기문의『訓民正音』<예의>의 분석

<해례>를 포함한『訓民正音』전체 텍스트를 논하는 것은 이번 발표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이 장에서는 상권 제1편의 '제1장 예의' 부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도설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그는 예의를 '序論章, 文字章, 用法章, 齒音章'으로 나누고 각각을 '原文, 譯文, 註解, 評解'의 순으로 텍스트에 배치하고 있다. '치음장'은 본래 15세기 '언해본'에만 있는 당시 중국 '漢音 齒聲'의 규정인 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문을 복원하고, 그에 따라서 역시 '원문, 역문, 주해, 평해'의 순으로 번역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을 원문자로 표시하여 특히 그 부분을 주해에서 상술하였다.

2.3.1. '第一節 序論章'에 대하여

홍기문은 '國之語音'을 '나라의 말'이라고 번역하고 '語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해로 밝히고 있다.

> "語音은 한 言語의 聲音的部分을 가르키는 것으로 個人의 言聲 내지는 語聲과 전연 뜻이 다른 것이다. 차라리 言語라는 말과 가깝게 쓴 것이다. 漢字의 音을 字音이라고 함에 대하야 우리말의 音을 語音으로 구별한 것이다. 물론 그 當時도 벌써 우리말 中에는 고유한 말外에 漢字로 된 말이 업지 안타. 거긔 쌀아서 우리말은 語音과 字音을 한께 包括하고 있다고 볼수 잇다."

'語音'은 한 언어의 성음적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의 말소리와 다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 '語音'을 우리말의 음으로 보고 한자음의 '字音'과 구별하였다. 그러나 우리말 속에는 이미 어음과 자음이 함께 들어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홍기문은 추상적인 언어로서 '語音'을 개별적인 말소리와 구별하고 있으며, 우리말의 음과 한자음인 '字音'과의 구별 의식도 지니고 있다. 홍기문은 '國之語音'을 고유어나 조선 한자음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9)]

홍기문에게 '文字'는 최만리 등의 반대상소의 일부를 인용하며[10] 漢字를 이른다고 단언하고 있다. 번역에서 '文字'는 그대로 '문자'로 번역하고 있는 바, 그의 『訓民正音譯解』(1949)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漢文字'로 번역하여 표현하고 있다. '愚民' '어리석은 백성'으로 번역하면서 세종실록의 '愚夫愚婦皆得易曉'라고 한 점을 전거로 들어 '한자를 모르는 그 당시 문맹을 '愚夫愚婦'로 일컬은 것이고 '愚夫愚婦'를 다시 '愚民'으로 약칭'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제는 '欲使人人習'과의 문제인데 이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여기서 세종이 '愚民'을 '人人'으로 고쳐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 '人人'은 반드시 '愚民'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11]. 발표자의 입장에서 홍기문의 이 맥락을 추론한다면 愚民은 말 그대로 文盲을 뜻하지만, '人人'은 어리석은 백성 말고도 당시 한자음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을 지정한 것이니, 그렇다면 '중인, 사대부'도 '人人'의 범주에 들게 된다. 홍기문의 이러한 해석은 훈민정음 창제의 중층적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2.3.2. '第二節 文字章'에 대하여

'第二節 文字章'에서는 번역과 분석에서 특별한 것이 없으나, '初發聲'에 대한 홍기문의 생각의 실마리는 '發'의 분포와 생략이다. 일반적으로는 '發'은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 음절에서 'onset'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나, 홍기문은 '初發聲을 다시 略하야 初聲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中聲이나 終聲은 애초부터 發字가 略되야 잇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잇다'고 하였다. 곧 '中發聲, 終發聲'이었으나, '發'자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인데,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이지만, '發'자가 '初'자와만 共起한다는 고정 관념에 대하여 다시

9) 이현희(1990, 2003)에서는 '國之語音'에 대한 후대 연구자들의 생각을 훈민정음 연구사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10) 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11) 그는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평이한 중에도 극히 함축이 많은 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독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2.3.3. '第三節 用法章'에 대하여

홍기문은 이 용법장의 '評解'에서 각 용법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용법장은 적어도 6항에 대하여 규정을 포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후학들이 연구한 현재의 운용 규정 분석과 차이가 없지만, 각각의 분석에서 홍기문만의 독특한 해석이 존재한다. 각 용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우선 '終聲復用初聲'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終聲復用初聲>

"聲으로는 初中終의 셋이지마는 終聲은 初聲을 도로 쓰는 까닭게 文字로는 初中 둘뿐이다. 이미 文字章에서 初中의 兩字를 보이엇는지라 終聲은 自然히 用法의 한 項으로 說明할 수박게 업는 것이다. 그런데 멋처럼 說明한 이 用法은 不過是 여섯 글짜다. 初聲 全部를 終聲에 쓸 것이란 말인지 初聲의 어느 一部만을 終聲에 쓸 것이란 말인지 甚히 明確치 못 하다. 단지 그 規定이 甚히 不明確함에 不拘코 明確한 事實이 꼭 한 가지가 잇는 것이다. 그 것은 무언고 한즉 구태어 그 規定을 명확히 안 한 그 點이다. 비단 終聲法뿐만이 아니요 다른 用法의 說明도 만히 이러한 態度아래 쓰이어 잇다."

위의 인용에 따르면 홍기문의 '종성부용초성'의 이해 방식은 그것을 制字 규정이 아니라 表記 규정으로만 보고 있다. 자모의 제자 규정 끄트머리에 위치한 이 규정을 그가 표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초성 전부를 종성에 쓸 것인지 그 일부만을 종성이 쓸 것인지에 대한 불명확성만을 언급하는 입장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종성의 제자 규정이라고 보는 입장을 그에게 발견할 수 없다. 그 위치가 제자 규정과 표기 규정의 중의적 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정우영(2016)의 기발한 해석에는 못 미치지만, 終聲復用初聲이 표기 규정이라는 점을[12] 처음으로 제기한 해석으로 이해된다.

12) 그 번역은 "終聲에는 다시 初聲을 쓰나니라"로 귀결되었다.

<連書法>

脣音에 ㅇ를 連音한 것이 脣輕音이라고 하니까 그냥 脣音이라는 것은 勿論 脣重音에 該當한 것임에 벗어 나지 안는다. (중략) 그러니까 脣輕音은 말하자면 實用上 不具의 音이다. 그러타고 實用되는 그 音까지를 排除할수도 업고 또 그러타고 實用되지 안는 無用의 字를 羅列할 수도 업는 것이다. 마츰내 脣音에 「ㅇ」를連書한다는 極히 合理的인 辦法을 취하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한다.

연서법은 순경음 규정인 바, 순경음에 대하여 脣音을 脣重音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음의 순경음을 고려하여 실용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不具의 音'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ㅸ'는 고유어 표기, 'ㅱ, ㅹ'은 한자음 표기에 사용되었지만, 'ㆄ'이 결여된 것을 가리키는 '無用의 字'를 나열할 수는 없었기에 순음에 'ㅇ'을 연서한다는 일반적인 규정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

<並書法>

이제 用法으로 또다시 並書를 끄낸 것은 적어도 文字章의 그이외에 잇서 說明을 必要로 한 것임에 틀림이 업다. 「合用」의 그 兩字나 「終聲同」의 그 三字로 미루어 생각 하더라도 文字章의 그 並書보담은 훨썩 廣範圍라 그 六字의 並書도 이 並書法의 一部分으로 包括되는 關係를 알수가 잇는 것이다. (중략) 이 並書法은 並書로 쓰이는 모든 初終聲을 包括하야 설명한 것이요 文字章의 그 並書는 그中의 全濁音이 되는 並書만을 설명한 것이다. (중략) 그 並書의 形式이 반듯이 同一字에 限한다는 것을 斷定할수는 업는 일이다. (중략) 本來 並書에는 同字의 並書도 잇고 各字의 並書도 잇는中 그 어떤 並書인지 文字章에서도 그것을 明示치 안 햇고 또 初聲이나 終聲의 並書도 어느 範圍로 쓰는 것인지 並書法에는 그 것을 또한 明示치 안 햇다.

특히 병서법에서 홍기문이 생각한 '合用의 의미는 포괄적이다. 그 합용은 같은 자를 나란히 쓰는 경우와 서로 다른 자를 나란히 쓰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는 문자장에서 언급한 병서는 전탁음이 되는 병서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고, '同字병서', '各字병서'도 존재함을 강조하였다. 해례의 <合字解>에 등장하는 '合

用並書'와 '各自並書'와는 다른 표현으로 '同字병서'가 곧 '各自並書'이며, '各字병서'가 해례 <合字解>의 '合用並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후학들이 'ㄲ,ㄸ,ㅃ...' 따위의 '各自並書'를 '各字並書'로 잘못 쓰는 경우를 적지 않게 확인하게 된다. 아무튼 홍기문의 '합용'은 문자장의 전탁음 자모 병서(各自並書)와 고유어 표기의 '합용병서'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례>에도 나오는 바, 중성의 '합용'도 홍기문의 시각에서 이 '합용'의 포괄적 의미에 종속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附書法>

"여긔서도 初聲과 中聲의 接書만 說明하엿지 다시 終聲과의 接書는 說明치 안 하얏다. 그역시 自明의 일로 쳐서 省略한 것으로 보인다."

홍기문이 부서법을 이해하는 방식도 용법장에 등장하는 '初聲之下, 初聲於右'에 붙여쓰는 중성 중심의 부서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의 부서법은 '初中終聲'을 포괄하는 '接書'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다만 종성을 초중성에 '붙여 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 용법장에서 생략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 생략한 표현을 한문 원문으로 복원한다면 '終聲附書初中聲之下'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서법에서는 중성은 초성의 아래나 오른쪽에 붙여 쓰고, 종성은 초성과 중성이 接書된 것 아래 붙여 쓴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接書'라는 용어가 이 예의에 표현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나, 그가 중성도 부서법의 일환으로 보고자 하는 확대 해석이 자못 흥미롭다. 그러한 그의 해석은 아래 <成音法>을 설명하면서도 등장한다.

<成音法>

"이項은 언뜻 보아 자못 明瞭하나 다시 생각하야 甚히 明瞭치 못 하다. 왜 그러냐 하면 「必合而成音」의 合字가 終聲까지를 포함하고 안 함에 좇아서 重大한 差異가 생기는 까닭이다. 물론 初中聲의 附書를 合으로 말한 것 가치 初中終聲의 附書도 合으로 말하얏슬 것은 事實이나 맨우에 언친

「必」의 一字가 問題다. 卽 終聲의 存在도 初聲이나 中聲과 가치 必須냐 아니냐 그 差異를 지적하는 말이다. 아모리 簡精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가치 重大한 차이를 曖昧케 할 수는 업다. 終聲法 並書法等의 文句나 마찬가지로 이역시 일부러 明瞭케 하기를 避한 것이 아닐까고 疑心한다."

홍기문은 '合'에 대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던지고 있다. 초성과 중성의 '合'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초성, 중성, 종성의 '合'이 둘이다. 그리고 이 '合'은 '成音'을 위한 개념이지만, 앞의 부서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附書'와도 연계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서법 다음에 成音法이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用法章 규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必'이 미치는 범위를 종성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에 대한 그의 해석은 終聲法과 並書法이 그러했듯이 명료하게 한정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발표자가 보기에도 음절 혹은 소리의 구성은 중성만 필수적으로 존재하면 가능한 것이니 그의 그러한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凡字必合而成音'을 단순히 '音'을 이루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附書'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밑줄 친 그의 탁견이다.

<四聲法>

"四聲중에서도 入聲은 上平去보담 抑揚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ㄱㅂㄹ」등의 終聲을 가지고 잇서 音으로까지 相異가 업지 안타. 그럼으로 去聲과 쏙 가치 一點을 찍더라도 그 終聲으로 인한 促急의 음을 가져 能히 去聲과 區別할 수 잇는것이다."

사성법과 관련해서는 위의 언급이 있는 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판단되는데 入聲을 去聲과의 구별하기 위한 설명만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의문이 남는다. 사성과 관련된 이 부분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홍기문은 용법장 총평에서 '用法의 本旨'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以上으로써 이 用法章에는 全然 說明되지 안 한 點의 두가지와 說明이 未分明한 點의 세가지가 잇는 것을 발키엇다. 다시 한번 要約해 말 하야 說明되지 안 한 점이란 中聲의 合用과 終聲의 附書요 說明이 未分明한 點이란 終聲의 制限, 並書의 區別과 制限, 成音의 範圍등이다."

홍기문은 '評解'의 총평으로 위와 같은 언급에 이어 이 용법을 규명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 '語音'과 한자음이 본질상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하나는 훈민정음의 제작자가 애초부터 原則과 便法의 두 용법을 마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예의를 마련한 세종이 복잡한 용법을 아주 간단한 문자로 서로 구애됨이 없도록 의도적으로 구성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2.3.4. '第四節 齒音章'의 복원과 분석

제4절에서는 치음장의 한문 복원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訓民正音』에는 漢音齒聲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홍기문이 이 절과 관련하여 그의 導說 '一 例義', '三 諺解'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以外 諺解에는 다시 漢音齒聲의 一節이 追加되여 잇는데 그 역시 用法에 속하나 多少 그 우의 用法과는 性質이 다른지라 齒聲의 一章을 따로 세울 수 박게 업다."(導說, 一 例義)

"그러고 諺解에는 齒音章이 追加되야 잇는데 그역시 世宗 자신인 것은 疑心이 업는 것이다. 그 것은 君王의 御製를 臣下가 건드리지 못 하얏슬 것가치 先王의 親製를 後代의 임금도 손대지 못 하얏슬 것인 까달기다. 물론 四聲通攷凡例에도 齒聲의 區別이 記錄되야 잇지 안 한 것은 아니로되 申叔舟成三問等의 編纂인 그 凡例가 아모래도 世宗의 말씀만 못 할 것은 事實이다. 齒音章의 그 한 대문만 가지고라도 諺解가 貴重한 文獻됨을 일치 안는다."(導說, 三 諺解)

홍기문은 위의 두 언급을 통해서 '치음장'도 사성법 뒤에 있으니 용법에 속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종의 친제임을 강조하면서 '漢音齒聲' 규정이 『訓民正音』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15세기 당시 언해본을 바탕으로 치음장의 한문을 복원하여 원문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譯文과 註解, 評解의 순으로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漢音齒聲有齒頭正齒之別 字用於齒頭 字用於正齒 牙舌脣齒喉之字通用於漢音

이 규정을 한문으로 복원한 홍기문의 의도는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고유어 表記, 조선 현실 한자음인 東音 표기, 東國正韻式 표준 한자음 표기, 洪武正韻譯訓에서의 漢音 표기를 모두 포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당시 외국어 발음기호(注音 기호)의 성격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해본에만 등장하는 '漢音齒聲' 규정이 간송본 『訓民正音』의 이본 어딘가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홍기문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복원을 시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뿐이다.

3. 보론 : 『正音發達史』(1946)에서 『訓民正音譯解』(1949)으로

『訓民正音譯解』에 대한 최초의 국어학사적 평가는 안병희(2007)에 수록된 '북한의 훈민정음 연구'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 그는 『正音發達史』의 개고라 할 정도로 내용이 비슷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그의 연구에서는 『訓民正音』 번역에 대한 언급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희 외(2014)에서는 『訓民正音』 해례본의 제번역 검토와 새 번역안 및 훈민정음해례 개념어를 제시하면서 『訓民正音譯解』 및 『正音發達史』의 『訓民正音』을 다른 번역과 비교하였다. 『訓民正音譯解』의 후기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本書의 譯註에서 漢文의 譯註는 주로 洪起文이 責任 執筆한 것이고, 語彙

註解는 주로 全蒙秀가 責任 執筆한 것임.

이 언급을 통해서 『訓民正音譯解』의 『訓民正音』 번역도 홍기문이 단독으로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방종현(1940),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1949)에서 『訓民正音』의 번역은 모두 홍기문이 주도한 업적임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해방 직후 방종현(1946)과 유열(1947. 1948)의 번역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訓民正音譯解』 역시 홍기문의 번역이라면, 해방 후 초기 『訓民正音』 번역의 흐름은 홍기문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기 전, 『訓民正音』의 번역은 홍기문이라는 한 인물의 영역 속에서 균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진척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正音發達史』의 <해례> 번역과 그 주해 및 평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그리고 방종현(1940), 홍기문(1946), 전몽수·홍기문(1949)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해례> 번역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해 내는 것도 해방 후 홍기문 중심의 『訓民正音』 번역사 연구의 또다른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분단의 한 쪽, 북한에 성글게 남아 있는 훈민정음 연구가 홍기문의 학풍 및 해석의 영역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4. 결론

이 발표의 결론을 본문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訓民正音』의 최초 번역은 명의는 방종현으로 되어 있으나, 홍기문의 단독 번역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최초의 번역이 두 사람의 협업이라는 관점이 우세했으나, 두 사람의 저서의 서문에서 드러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홍기문 단독 번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正音發達史』(1946)에 전재된 『訓民正音』의 번역은 그 의고적 문체에도 불

구하고 최초의 현대 완역이다. 방종현 명의의 <朝鮮日報> 기사본(1940)은 <예의>와 <정인지후서>가 그의 표현대로 未定稿로 돼 있으며, 방종현(1946)의 번역에서는 <정인지후서>의 번역은 이루어졌으나, 예의 번역이 역시 누락돼 있고 15세기 언해본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正音發達史』의 『訓民正音』 번역은 어제서문을 포함한 <예의>와 <해례>, 그리고 <정인지후서>를 모두 번역한 최초의 완역임을 밝혔다.

『正音發達史』(1946)의 『訓民正音』 번역 텍스트 구조는 原文, 譯文, 註解, 評解로 나뉘어 단순한 번역을 넘어 국어학사적 업적의 대상이다. 그 텍스트 구조 안에는 지금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신선하고 참신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例義'라는 용어의 근본적 이해, '諺解'의 세 범주(諺讀, 諺註, 諺譯), 語音과 字音의 구별, 合用의 포괄적 의미, 附書와 接書의 개념과 그 확장, 成音과 合에 대한 이해는 훈민정음 개념어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촉발이다. 향후 훈민정음 연구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이 발표에서는 『訓民正音』 번역 주체로서 홍기문이라는 인물, 또한 그가 『正音發達史』(1946)의 『訓民正音』 번역 과정에서 주로 '評解'를 통해 드러난 『訓民正音』의 다양한 개념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점에 주목하여 그의 번역과 그 연구를 국어학사의 한 경향으로 다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2016.5.18.)

사료문헌

방종현(1940), "原本 訓民正音의 發見", <朝鮮日報> 연재 기사본, 7.30~8.4일자.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상하)』, 1946.8.30., 서울신문사.
전몽수, 홍기문(1949), 『訓民正音譯解』, <조선어문연구회>.

참고문헌

강영주(1992), “홍명희 연구1～6”, 『역사비평』 18·24·25·30·31·38호(1992～1997).

강영주(2004), “특별연구: 학자 홍기문 연구”, 『역사비평』 68, pp.154~198.

강영주(2004), 『벽초 홍명희 평전』, 사계절출판사.

金敏洙(1957), 『注解 訓民正音』, 通文館.

金敏洙(1980), 『新國語學史』, 서울:一潮閣.

金敏洙(1985), “「훈민정음」(해례(解例))의 번역에 대하여”, 『외국어로서한국어교육』, 연세대 한국어학당, pp.19~45.

金敏洙 편(1991), 『북한의 조선어연구사』, 서울:녹진.

金榮福·丁海廉 역(1997), 『홍기문 조선문화론선집』, 서울:현대실학사.

김영황·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方鍾鉉(1946), 『原本解釋 訓民正音』, 震學出判協會.

백두현(2015), “훈민정음의 사용보급정책에 관한 연구의 성과와 방향”, 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 2015년 제2차 문자 연구 학술대회, 국립박물관.

安秉禧(2007), 『訓民正音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근수(1988), “국어학사의 재조명: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 『주시경학보』 2, pp.207~218.

이상혁(2004),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이상혁(2005),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

이상혁(2005), “홍기문과 원본 『訓民正音』의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23, pp.235~253.

이상혁(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 −1945~1950년 초기 국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pp.5~32.

이상혁(2011), “북쪽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 분석과 학문적 계보”, 『우리어문』 39, pp.275~299.

이현희(1990), “訓民正音”,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pp.615~631.

이현희(2003), “훈민정음연구사”, 『한국의 문자와 문자연구』, 집문당, pp.593~626.

이현희 외(2014), 『訓民正音의 한 이해』, 역락.

정우영(2016), “≪훈민정음≫ 해례본의 현대어 표준 번역을 위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현대어 번역 표준화 학술 소모임 발표문.

최경봉(2016), 『근대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최호철(2005), “동숭학술재단이 선정한 언어학자 : 홍기문(1903−1992)”『동숭학술재단 소식』 제9호.